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6893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공약품·의료약품 및 연관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54. 11. 25. 설립되어 '군산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3. 15.경 '[redacted]구 C'에 서울지점(이하 '이 사건 종전 [redacted]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02. 4. 22.경 이 사건 종전 [redacted]지점의 사업자등록(사업종목: 정밀기계, 무역, 임대)을 마쳤다. 원고는 2012. 3. 23. '여수시 D'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2013. 8. 16. '서울 구로구 E'에 F이라는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2013. 10. 15. 사업자등록(사업종목: 골프연습장, 빙상장, 임대, 체력단련장, 사우나)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2. 21.경 피고로부터 [redacted]구 G 외 6필지 지상에 A동(기존건물)을 증축[연면적 630.12㎡ 증가, 층수 1개층 증가,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B동을 신축[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6,420.67㎡, 운동시설(아이스링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목욕장, 휴게음식점)·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이하 증축된 A동 부분과 신축된 B동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3.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도시 내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833,295,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빙상장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전 [redacted]지점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에서 화학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화학공장이 여수로 이전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자는 이 사건 종전 서울지점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이어서 이 사건 종전 [redacted]지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점을 설치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점은 형식적인 지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서울지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지점의 설치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점의 설치로 인하여 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지점설치 등

가) 원고(변경전: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는 1954. 11. 25.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시에는 '서울 구로구 C[1]'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2002. 3. 15. 본점을 '군산시 B'으로 이전하였다.

나) 위와 같은 본점 이전에 따라 2002. 3. 15.경 [redacted]구 C'에는 이 사건 종전 [redacted]지점이 설치되었고, 이 사건 종전 [redacted]지점은 2015. 11. 30. 주소를 '[redacted]구 J[2]'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사업자등록에 따른 이 사건 종전 서울지점의 업태는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업이고, 사업종목은 정밀기계업, 무역업, 임대업이었다.

다) 원고는 2012. 3. 23. '[redacted]시 D'에 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서울지점의 직원 64명 중 40명은 위 여수지점으로 이전하였고, 18명은 이 사건 종전 서울지점에서 관리 및 영업을 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6. '서울 구로구 E[3]'에 이 사건 지점을 설치하였고, 사업자등록에 따른 이 사건 지점의 업태는 서비스업, 부동산업이며, 사업종목은 골프연습장업, 빙상장업, 임대업, 체력단련장업, 사우나업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로명 주소: [redacted]구 L
2) 지번 주소: [redacted]구 M
3) 지번 주소: [redacted]구 N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F(이 사건 지점, 이하 이 표에서 '갑'이라 한다)과 K(이하 이 표에서 '을'이라 한다)은 업무 도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도급업무의 범위

본 업무도급계약에 기한 도급업무의 범위는 "첨부 2 위탁주문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단, 도급의 범위는 '갑'의 판단에 따른 '을'의 도급수행능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도급계약 금액

1.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도급 대금액은 '첨부1 도급비별도 합의서'에 따른다.
2. 본 계약 체결 후 노무비 등 기타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 변경을 요할 때는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을'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근무 초과시간 발생 시 도급비를 별도 정산하기로 한다.
4. 본 스포츠클럽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지급도록 한다.

제5조 현장대리인

1. '을'은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대하여 '갑'과 연락조정을 하고, '을'을 대리하여 개별주문사항을 도급처리하며,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함)를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을'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본 업무이행에 관한 '갑'과의 연락과 조정
 3) '갑'의 주문사항의 도급 또는 수임, 주문서 외의 특별사항의 처리
2. '갑'은 본 계약 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주문, 지시 등은 '을'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3. '을'은 '현장대리인'의 선임계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6조 시설, 장비 및 용도품

1. '갑'은 '을' 소속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피복,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안경, 특수복, 면장갑 등)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4. '을'은 도급에 필요한 장비는 '갑'에게 의뢰 구입 사용토록 한다.
 단, '갑'의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계약업무의 이행

'을'은 수탁업무의 이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3. '을'은 업무이행현황표에 의하여 그 업무이행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대리인'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업무처리의 책임

'을'은 본 계약업무와 처리에 대하여 하자가 있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갑'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경우 상호 협의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그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위반 등에 의한 해지

1. '갑' 또는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 정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할 때

#첨부 1 도급업무 도급비 별도합의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제4조 도급료
1) 기본도급료
'갑', '을' 쌍방의 합의로 도급료는 월 기준으로 "첨부 1-1 도급비"와 같이 정한다.

#첨부 1-1 도급업무 도급비 별도합의서
필요인원 현황

도급업무 및 장비	인원	도급비
골프연습장	월 변동인원(약 20명)	월별 정산금액
아이스링크	월 변동인원(약 10명)	월별 정산금액

#첨부 2 도급업무 위탁 주문서
제2조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 내용은 원고 F에서 지정하는 업무로 한다(상세내역은 별첨 2-1 '위탁주문내용서' 참조)

#첨부 2-1 위탁주문내용서
1. 도급의 종류: 원고 F에서 발생하는 주업무
2. 도급업무:
1) 스포츠시설 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유지관리 및 회원관리업무(점검 및 보수, 회원관리)
2) 차량 및 인원 통제(회원 차량관리 및 출입차량관리)
3) 스포츠시설 내 청결유지
4) 기타 '갑'이 지정한 도급업무

3) 원고의 조직도에 따르면 원고는 [redacted]공장, [redacted]공장, O공장, 연구소, 영업본부, 관리팀, F으로 나뉘고, F은 운영팀과 시설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조직표에 따르면 F 소속 직원으로 P과 Q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5, 17호증,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8항은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에서의 이 사건 지점 설치에 따른 것으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지점은 2013. 8. 16. '서울 구로구 E'에 설치되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3.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도시에 이 사건 지점이 설치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졌으므로 지점의 설치에 따른 취득세 등의 중과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의 설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는 이 사건 종전 서울지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지점의 업태는 서비스업, 부동산업이고, 사업종목은 골프연습장업, 빙상장업, 임대업, 체력단련장업, 사우나업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이 증축되면서 용도가 기존의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고, 신축된 B동의 용도는 운동시설(아이스링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제1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목욕장, 휴게음식점)·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인 점, ㉡ 이 사건 종전 서울지점의 업태는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업이고, 사업종목은 정밀기계업, 무역업, 임대업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와는 차이가 존재하는 점, ㉢ 원고와 K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업무를 위탁하는 주체로 이 사건 지점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지점이 실질적으로 도급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조직도나 조직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지점에 관한 업무분장이 존재하고, 소속 근로자 역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점이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이 사건 종전 서울지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종전 서울지점의 사업의 형태, 이 사건 부동산은 종전 부동산과 달리 새로운 용도로 증축되거나 신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의 설치로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점의 설치에 따른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의 집중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상당한 규모로 증축 내지 신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는 음식점, 골프연습장, 체련단련장, 소매점, 목욕장, 휴게음식점, 세차장 등으로 종전의 용도인 공장에 비하여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의 집중 효과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김주성

판사 차선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별지

[표]

(단위: 원)

순번	일자	서울 구로구 N 골프연습장 중과분		서울 구로구 N 신축신고 당시 신고 누락분 중 중과분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2017. 6. 19.	취득세	248,904,770	취득세	54,415,840
2		지방교육세	49,780,950	농어촌특별세	5,441,580
3		취득세 가산세	119,872,530	취득세 가산세	31,648,240
4		지방교육세 가산세	18,996,410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076,500
합계			437,554,660		93,582,16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7-05

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끝.